

교원 연봉제 운영규정

제정 2000. 1. 1	개정 2006. 6. 1	개정 2018. 3. 1
개정 2000. 3. 1	개정 2007. 2.16	개정 2018. 3.16
개정 2000. 8.11	개정 2008. 9.16	개정 2019. 6.17
개정 2002. 3. 1	개정 2013. 3. 1	개정 2020. 2.19
개정 2004. 2. 1	개정 2016. 3.16	
개정 2004. 3.18	개정 2017. 9. 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원인사규정 제32조에 의거하여 교원의 연봉제(이하 “연봉제“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제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교원인사규정 제3조 제1항의 교원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탁월한 교원을 채용하고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총장이 인정할 경우에는 이 규정의 기준과는 다른 별도의 기준으로 연봉을 책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수“라 함은 연봉, 제수당 및 비누적 성과급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6.6.1)(개정: 2013.3.1)(개정: 2019.6.17)
2. “연봉“이라 함은 교원 개인의 능력, 경력, 사회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을 말하며, 교원 개인에게 당해연도 3월부터 익년도 2월까지 1년간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6.6.1)(개정: 2013.3.1)
3. “제수당” 이라 함은 자녀학비보조수당, 초과강의료, 주거안정수당, 육아휴직수당, 기타 수당을 말하며, 인상을 적용 및 기본연봉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8.9.16)(개정: 2020.2.19)
4. “비누적 성과급“이라 함은 재직 중인 전임교원을 대상으로 기본연봉 이외에 최근 1년내 성과평가를 통해 지급되는 성과급을 말한다. (신설: 2019.6.17)
5. “월봉액“이라 함은 개인별 연봉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6.6.1)
6. “일할계산“이라 함은 그 달의 월봉액을 근무한 일수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근무일수“라 함은 발령일을 포함해서 재직한 일수이며 중간의 휴무일을 포함한다.

제4조(보수의 체계) 교원의 보수체계는 연봉 및 제수당으로 한다. (개정: 2006.6.1)

제5조(지급방법) ① 연봉이 책정되면 12개월로 균등배분하여 매월 지급한다. (개정: 2008.9.16)(개정: 2013.3.1)

② 제수당은 지급 해당월 15일 현재의 기준으로 지급한다.

제6조(계산기간) 교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의 근태계산기간은 전월 16일부터 당월 15일까지

지로 한다.

제7조(단수처리) 제5조에 의거하여 교원에게 지급되는 월봉액을 계산할 때 원미만 단수는 버린다.

제8조(계산기준) ① 월봉액 계산은 임용, 전보 및 복직 발령일로부터 기산하고 휴업, 휴직, 정직 발령전일 및 면직 발령일로 마감한다. 다만, 파면 이외의 사유로 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당월분 월봉액 전액을 지급한다.

② 감봉처분을 받은 교원에 대하여는 발령된 달의 월봉액 계산 기산일로부터 감봉기간 감액한다.

③ 면직, 휴직 또는 임용기간이 만료된 자가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로 인하여 계속 근무한 때에는 그 기간분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월봉액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정직 또는 파면 발령일이 당월 보수 지급 이후에 시행된 때에는 기 지급된 보수 지급액은 회수하지 아니한다.

⑤ 이 규정이 개정된 때에는 그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당월분 보수를 지급한다.

⑥ 퇴직한 자에게는 보수지급 이후에 보수의 인상으로 소급분이 발생할 경우 소급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⑦ 일할계산시 일당기준금액은 월봉액을 해당월의 총일수로 나눈 것으로 한다.(개정: 2007.2.16)

⑧ 일할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일당기준금액 × 근무일수 = 지급액

제9조(겸직시 보수) 교원이 겸직할 때에는 상위직에 해당하는 보수만을 지급한다.

제10조(결근시 보수) ① 당월 지급기간내에 유계결근 총일수가 7일 이내인 때에는 당월분 보수의 전액을 지급하고, 8일 이상인 때에는 제11조를 준용한다.

② 무계결근시 보수는 결근일수에 일당을 곱한 금액만큼 감액 지급한다.

제11조(휴직 및 징계중의 보수) ① 휴직한 교원의 휴직 기간중 월봉액은 법인정관에 정한 바에 의한다.

② 징계 중의 보수는 교원인사규정 제40조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12조(지급일) ① 교원의 보수는 매월 17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② 사망자나 퇴직자에게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 2 장 적용 및 평가

제13조(총연봉 책정원칙) ① (개정: 2006.6.1) (삭제: 2013.3.1)

② 연봉은 총재원 범위 내에서 제반 여건과 교원 개인의 업적평가 결과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 책정한다. (개정: 2006.6.1)(개정: 2013.3.1)

③ (개정: 2006.6.1)(삭제: 2013.3.1)

④ 총장은 제2항에 의한 개인별 차등책정과는 별도로 학과평가 결과에 따라 학과별로 차등 책정할 수 있다.

⑤ (삭제: 2006.6.1)

제14조(평가절차 및 연봉책정) ① 교원의 업적평가는 소속학과(학부)의 장이 주관하여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교무처장에게 제출한다.

② 총장은 학과(학부)의 장의 평가결과 등을 근거로 교원 개인별 연봉을 확정, 시행한다. (개정: 2006.6.1)

③ 신규임용 교원의 연봉은 경력과 능력에 따라 소속학과(학부)의 장과 교무처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결정한다.

④ 부총장, 대학원장, 각 처장, 학술정보처장 등 주요보직자와 각 학과(학부)의 장에 대한 업적평가는 총장이 별도로 수행한다.

⑤ (삭제: 2006.6.1)

⑥ (삭제: 2006.6.1)

제15조(평가항목) ① 교원의 업적평가 항목은 교육, 연구(학술연구/산업연구), 봉사 부분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6.3.16)

② 연구부문은 연구비 수혜실적, 논문발표실적, 연구결과 활용실적, 산학협력실적 수상실적 등을 포함한다.(개정: 2016.3.16)

③ 교육부문은 강의평가, 석·박사 배출실적, 교수법 개발실적, 교과과정 개발, 교재 개발 실적 등을 포함한다.

④ 봉사부문은 국내외 학회활동 실적, 교내 및 공공기관의 각종 위원회 활동실적 등을 포함한다.

제16조(평가방법 등) 세부적인 평가항목과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각 학과의 특성을 살리는 차원에서 각 학과별 자체적으로 설정 후 시행한다. (개정: 2016.3.16)

제 3 장 제 수 당

제17조(가족수당) (삭제: 2009.9.16)

제18조(보직수당) 교육행정사무의 책임을 맡은 교원에 대하여 별표2의 보직수당을 지급한다.

제19조(자녀학비보조수당) 교원에게는 자녀학비 보조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0조(개인연금보조수당) (삭제: 2013.3.1)

제21조(초과강의료) 전임교원의 초과강의료는 강의료 지급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21조의2(주거안정수당) 교원에게는 주거안정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00.8.11.)

제21조의3(육아휴직수당) 정관 제47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교원에게는 교육공무원 규정에 준하여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한다.(신설: 2020.2.19)

제21조의4(기타수당) ① 교원에게는 사기진작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경우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특별격려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8.3.16)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입시수당, 강좌개발수당 등은 예산범위 내에서 총장이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8.3.1)

제 4 장 비 누 적 성 과 급

제22조(비누적 성과급) ① 재직 중인 전임교원에 대하여, 최근 1년간의 업적을 평가하여 비누적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9.6.17)

② 성과급의 지급대상자,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총장이 정한다. (신설: 2019.6.17)

제 5 장 보 칙

제23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교원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규정 또는 기타의 예에 준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2. (경과조치) ① 2000년 1월에 지급하는 보수의 계산기간은 1999년 12월 16일부터 적용한다.
 - ② 2000년도 기본연봉은 1999년 12월 기준으로 교원 보수체계 중 본봉, 연구보조비, 교재개발비, 기말수당(600%), 정근수당(200%), 체력단련비(250%)를 합산한 금액을 1999년도 개인별 기본연봉으로 하여 책정한다.
 - ③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교원은 시행일로부터 교직원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 (경과조치) ① 2000년 3월에 지급되는 보수의 계산기간은 2000년 2월 16일부터 적용한다.
② 2000년도 기본연봉은 1999년 12월 기준으로 교원 보수체계 중 본봉, 연구보조비, 교재개발비, 기말수당(600%), 정근수당(200%), 체력단련비(250%), 하계휴가비를 합산한 금액을 1999년도 개인별 기본연봉으로 하여 책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0년 8월 1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4년 2월 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4년 3월 18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6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하며 규정 개정 이전에 시행된 업적연봉제는 이 규정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2월 16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9월 16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2. (가족수당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개정 시행일 현재 재직 중인 교원에게는 2008년 9월 15일 기준 가족수당 지급액을 기본연봉에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차량유지비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개정 시행과 동시에 ‘자기차량유지비지급 지침’은 폐지하며, 이 규정 개정 시행일 현재 재직 중인 교원에게는 2008년 9월 15일 기준 차량유지비 지급액을 기본연봉에 가산하여 지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20조 개인연금보조수당 폐지는 2012년 12월 급여지급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3월 1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제15조 제1항 및 제2항, 제16조의 개정 내용은 2017년 교원 업적 평가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3월 16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6월 17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2월 19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별표1) 가족수당(삭제: 2008.9.16)

(별표2) 보직수당(개정: 2017.9.1)

보 직 수 당

(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
부총장	1,500
대학원장 (일반, 전문·특수 대학원장)	1,000
산학협력단장	1,000
처장급 (기획, 교무, 입학·학생, 행정, 연구, 산학, 학술정보처장)	1,000
부처장급(부처장, 감사실장)	750
주임교수급 (수학, 물리, 화학, 생명, 신소재, 기계, 산경, 전자, 컴공, 화공, 창의IT 주임교수 및 인문, 무은재새내기학부장)	750
대학원과정 주임교수급 (첨단재료, 융합생명, 정보전자, 첨단원자력, 환경, 시스템생명, 기술경영과정 주임교수)	650
부속기관 / 부설연구소(A급) (교육혁신센터, 어학센터, 상담센터, 스포츠지원센터, 기술지원센터장 및 신문사 주간, 생활관장, 독립채산기관인 부설연구소의 장)	500
부속기관 / 부설연구소(B급) (기타 부설연구소의 장)	300

※ 보직을 겸할 경우에는, 그 중 상위직급의 수당을 지급한다.

※ 독립채산기관 및 부설연구소는 자체재원으로 지급한다.

※ 부설연구소의 경우, 보직수당 지급에 대하여 별도 승인을 득한 후 상기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